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 1. 21)

거창승강기산업벨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노해

<의안번호 제2011 - 6호>

거창승강기산업벨리 선도기업체 투자유치
계획변경 동의안
[검토 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1. 1. 1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 1. 14.

2. 제안이유

-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20개이상 유치시 8만평 이상 공장용지가 소요되므로 20개이상 유치를 위해서 지원기준 완화가 필요
- 투자유치 계획서 제출업체가 요구하는 공장용지 제공시 군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업체가 요구하는 면적을 5만여평으로 조정 불가피
- 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 지연으로 2010년 12월까지 투자(분양)계약 체결 애로
- 기업체 특성상 20여개 이상 업체와 일시에 동시 계약 체결 애로
- 군 재정상 「시설·설비자금 융자」 이차지원 기간 조정

3. 주요내용

구 분	당 초	조 정·변 경	비고
특별지원 대상 선정기준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인 ◦ 창업·신설·증설의 경우 이전 전·후 30인 이상 또는 ◦ 전부 이전의 경우 이전 전·후 10인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20개 이상 유치시	◦ 입주후 상시고용 10인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20개이상 유치 시	
업체수 및 공장 용지	◦ 20개 업체 이상 ◦ 5만여평	◦ 20개 업체 이상 ◦ 168,595m ² (5만1천여평)	
시설·설비 자금 융자 이자 지원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특별지원 소요예산	①재원별 : 총257.53억원 ◦ 국비10.34억 ◦ 도비26.63억 ◦ 군비188.94억 ◦ 민자31.62억 ②연도별 군비 소요액 ◦ '11(65.95억) ◦ '12(51.78억) ◦ '13이후(71.21억)	①재원별 : 총220.34억원 ◦ 국비8.65억 ◦ 도비19.36억 ◦ 군비160.71억 ◦ 민자31.62억 ②연도별 군비 소요액 ◦ '11(41억) ◦ '12(44.26억) ◦ '13이후(75.45억) ※산출내역 : 불임2참조	
계약체결 기간조정	◦ 2010년 12월까지 계약체결	◦ 2010. 12. 29 ~ 2011. 2월까지	

4. 관련법령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거창승강기산업벨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14조 : 보조금 지원

5. 검토결과

- 승강기 R&D는 기업에 대한 지원시설이므로 R&D 관할청인 지식경제부와 경상남도에서 20개이상 업체 유치시 R&D를 건립할 수 있다는 요청이 있으므로 당초 계획안과 같이 추진할 경우 10만평의 부지가 필요하고, 거창군 지원금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수용이 불가하기에 지원 대상기준을 완화하여야만 5만평부지에 20개이상 업체를 유치할 수 있으며
- 또한 이차지원기간을 3년거치 5년을 2년거치 3년으로 조정한 것은 조례에 부합하고, 계약체결기간은 산업단지 분양공고가 지연되었기에 조정이 불가피함.
- 우리군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할 때 계획 변경 안을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거창승강기산업밸리- 투자유치 계약체결 대상업체 현황

[기준일자 : 11. 1. 11일 현재]

업 체 현 황					업 체 투자의향				
NO	업 체 명	대표자	연락처	지역	부 지	투자금액	고용	투자분야	이전
계	22개 업체				51,000평	639억원	681명		
1	(주)코리아엘텍	송준호	010-9526-5882	안양	3,011평	19억원	23명	중소기업형 권상기제조	전부
2	(주)모든E/L	김호일	010-3501-0831	대구	3,914평	37억원	45명	완성품 제조	전부
3	경일ELS	박종환	010-9916-1656	대구	989평	4억원	10명	제어반 제조	전부
4	오양테크	이미숙	011-847-4435	창원	5,800평	89억원	60명	부품 및 완성품 제조	전부
5	대영ENG	이경호	010-6406-5913	김해	2,000평	14억원	36명	승강기 부품제조	창업
6	누리엔지니어링	전종백	010-2672-7880	김해	2,934평	35억원	28명	제어반 제조	전부
7	(주)도하인더스트리	김홍규	010-7169-4104	김해	7,000평	100억원	100명	승강기 부품 소재	일부
8	(주)스타리프트	이영자	010-2251-7071	화성	2,000평	18억원	24명	도어류 부품 및 완성품	전부
9	대덕엔지니어링(주)	권순범	017-281-3594	부천	1,072평	12억원	11명	주차기용 E/L 제조	전부
10	(주)메이저텍 동천기업(주)	정오현 이정민	010-8283-8969 011-9000-2439	광명	2,125평	20억원	15명	로프브레이크 등 제조	전부
11	(주)해성산전	이현국	010-5330-8354	인천	963평	10억원	30명	승강기 TM 제조	증설
12	엔이테크	김동원	011-327-1320	김포	2,016평	24억원	23명	완성품 제조	전부
13	(주)오코	박영하	010-8703-0063	함안	5,754평	52억원	123명	승강기 바닥 등 제조	전부
14	(주)금보E/L	김영환	017-564-5133	부산	1,000평	10억원	18명	완성품 제조	증설
15	오대양 글로벌	신양건	010-3258-3314	창원	1,500평	15억원	19명	승강기 부품 소재	증설
16	안승엘리베이터(주)	이기표	010-6744-4428	부산	922평	11억원	14명	승강기 부품제조	증설
17	스트롱플러스	박재민	010-7527-8989	시흥	2,000평	23억원	19명	승강기 부품제조	전부
18	(주)신한엘리베이터	음한욱	017-248-5302	김포	1,000평	11억원	10명	승강기 제조	창업
19	아이티리프트	유승하	010-7113-3535		1,000평	90억원	20명	IT-Vator 개발 및 생산	창업
20	선유기기	조한식	010-6244-0935		1,000평	15억원	13명	승강기 레일, 부품제조	창업
21	ES엘리베이터	홍석천	010-8901-0360	서울	2,000평	20억원	25명	풍력 엘리베이터	전부
22	JEND(주)	정재준	010-5090-1411	시흥	1,000평	10억원	15명	승강기부품 소재	전부

※ 산업단지 용지매매 계약금(분양가의 10%) 미 납입시에는 투자 계약 및 산업단지입주 계약은 해지(해제)처리하고 2011년 2월 까지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로 대체하여 계약체결.

[붙임 2]

소요예산 세부 산출근거

[단위 : 억원]

구분	내역	재원구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계		220.34	8.65	19.36	160.71	31.62	
입지 보조금 (22개업체, 51,000평, 90%보조)	분양금액 : 평당303천원×51,000평=155억	139.2	8.65	0.36	130.19		
	[국비지원 : 3개업체, 6,000평] (6,000×303,000)×50%보조=9.1억 ▪ 국비 : 9.1억×95%=8.65억 ▪ 도비 : 9.1억×4%=0.36억 ▪ 분담금 중 군비 : 9.1억×1%=0.09억 ▪ 군비 : 18.2억×40%=7.3억	16.4	8.65	0.36	7.39		
	[국비지원 비대상 : 19개업체, 45,000평] 45,000×303,000=136.4억 ▪ 군비 : 136.4억×90%=122.8억	122.8	-	-	122.8		
용자 이차보전 (2년거치 3년상환)	10억×22개업체×5%(6%中)=11억	44	-	19	25	-	
	▪ 도비대상(19개 기업) - 2년거치 3년 상환(2.5% 이차보전) ⇒ 3년간 14.2억, 2년간 4.8억원	38	-	19	19		이자 부분 (원금 별도)
	▪ 도비 비대상(3개 기업) - 2년거치 3년 상환(도 지원액 차액) ⇒ 3년간 4.5억, 2년간 1.5억원	6	-	-	6	-	
물류 손실보전 (3년한도 지원)	3년간 차량 및 유류, 인건비 지원 =5.52억원	5.52			5.52	-	
	[차량지원 3대(5ton 2대, 10ton 1대)] [유류대 및 기사 인건비 지원(년간)] ▪ 차량 : 5천+5천+7천 = 170백만원 ▪ 유류 : 186,000원×40주×3대=22,320천원 22,320천원×3년 = 66,960천원 - 1,000km, 연비8km, ⇒ 125L - 125L×1,488원(1488원/L)=186,000원 ▪ 인건비 : 35백만원/연 × 3인=105백만원 105백만원×3년 = 315백만원	5.52	-	-	5.52	-	3년간 지원
주거지원 (공영 원룸 건립시)	임대APT 또는 공영원룸 민자유치 추진	31.62	-	-	-	31.62	
	▪ 부지매입비 (1,600평기준) - 1,600평 × 500,000원 = 8억 ▪ 건축공사비 945평(50세대, 825평, 5층규모) 825평 × 2,500천원 = 20.62억 ▪ 부대공사비(공사비의 15%) = 3억	31.62	-	-	-	민자 31.62	12개월 입주 한도

관 계 법 령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 22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 2000.11.15>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20><개정 2010.03.29>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10.30>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이상인 경우 <개정 2008.10.30><개정 2010.03.29>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개정 2010.03.29>

[거창승강기산업벨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 14조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벨리로 이전하

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밸리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